

개요

목적

주식회사 제주항공(이하 '제주항공')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협력 회사와의 동반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에 '제주항공 협력 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제주항공의 협력 회사 및 그들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회, 환경, 윤리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총 4개의 분야(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항공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 회사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은 물론,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국내 법률 및 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 등 다양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규와 상충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기준이 상이한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

본 행동규범은 제주항공과 거래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 회사에 적용됩니다. 제주항공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 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거래업체(하위 협력 회사)에 본 행동규범의 자발적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노력

제주항공은 거래 계약 체결 시 협력 회사에 본 행동규범을 공유하며, 협력 회사 또는 협력 회사의 근로자가 제주항공과의 거래 계약 및 사업 운영 도중 발생한 고충 사항을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며, 접수된 내용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노동 및 인권

협력 회사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해 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강제노동 금지

협력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협력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 및 퇴직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력 회사는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신분증, 여권, 근로 허가증 및 기타 개인 문서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아동노동 금지

아동노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15세 미만자 또는 법규에서 정한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소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한 안전·보건 및 환경적 측면 상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차별 금지

협력 회사는 채용 및 고용 활동(채용 과정, 임금, 승진, 보상 등)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유무,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노조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4. 근로 시간 준수

근로 시간은 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비상사태 및 특수 상황 제외), 휴일은 법에 규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 회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 회사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 임금, 초과 근무수당, 법정 복리후생 등 각 국가 및 지역에서 규정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인도적 대우

협력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인간으로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7. 단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협력 회사는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협력 회사는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재해 및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산업안전 관리

협력 회사는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 유해·위험 요소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식별된 유해·위험 요소는 안전·보건 관련 개선대책 및 교육의 제공을 통해 근로자가 개선사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사상,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합니다.

2.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 회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 내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산업재해 및 질환 사례의 분류 및 기록, 필요한 의료 처치의 제공,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의 시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산업 위생과 보건

협력 회사는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하며, 근로 환경과 근로자들의 위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된 잠재적 위험 요소는 인적, 공학(기계)적, 행정적 개선 및 제어를 통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합니다.

4. 안전보건 교육

협력 회사는 정기적으로 작업장 안전보건 정보 및 교육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근 및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5. 비상상황 대응

협력 회사는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이 포함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감지기, 경보기 등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 대피로를 지정하고 비상 대피 절차를 보유 및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

협력 회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 회사는 사업 운영상 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폐기물 관리

협력 회사는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량 절감 및 재활용률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대기오염

협력 회사는 작업과정 중에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연무제, 부식제, 오존 파괴 물질, 미세먼지,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운전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수질오염

협력 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출 및 폐기하기 전에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용수 사용량의 감축 및 수자원 보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폐수 처리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5. 유해 물질 관리

협력 회사는 인간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 폐기물 등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 및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협력 회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생태계 보호

협력 회사는 사업 운영 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생물 다양성 확보, 산림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점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리

협력 회사는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 관련 법령 및 규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공정한 거래

협력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사와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2. 부패 방지

협력 회사는 모든 거래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하고, 직간접을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소통 창구 운영

협력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과 비윤리 행위 관련 신고 및 제보 채널을 운영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보 발생 시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지식 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협력 회사는 모든 거래에 있어 지식 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해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책임 있는 원자재 수급

협력 회사는 구매하는 원자재, 부품, 제품 등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 사회환경적 이슈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